



수신자 수신자참조  
(경유)  
제목 자격취득교육 안내

1. 귀 기관·사·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우리 한국전파진흥원은 전파법시행령 제105조 제4항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취득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준정부기관으로서 2010년도 하반기에 시행하는 자격취득교육을 많은 인원이 이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통신인력, 산업인력 양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가. 정기교육

- o 자격종목 : 제한무선통신사
- o 교육일정

교육일자	교육지역
9월 14일	원주
11월 9일	강릉

나. 특별교육

- o 기관, 단체 등에서 20인 이상이 요청할 경우 시행  
- 다만, 도서·벽지 등의 경우 20인 미만이라도 가능
- o 시행일정 : 수시
- o 시행종목 : 제한무선통신사, 육상무선통신사
- o 시행장소 : 요청기관 혹은 요청기관이 희망하는 장소

다. 교육과목 및 시간

자 격 종 목	과목별 교육시간	총 교육시간
제한무선통신사	전파법규 : 3시간 무선전화 및 레이더취급방법 : 4시간 통신보안 : 1시간	8시간
육상무선통신사	전파법규 : 9시간 기초전파공학 : 8시간 통신보안 : 1시간	18시간

라. 교육방법 : 강의 및 시청각교육 병행 실시

마. 교육수강료(교재비포함)

o 제한무선통신사 : 60,000원

o 육상무선통신사 : 150,000원

※ 담당자 : 서혜련

TEL : 033-732-8501, FAX : 033-732-850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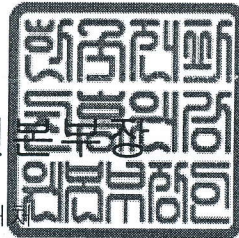
붙임 1. 무선종사자의 자격범위 및 종사범위 1부

2. 수신처 목록

1부. 끝.



한국전파진흥원 강원본부장



수신처 강릉전파관리소, 강릉원주대학교, 관동대학교 외 90개

★담당 서혜련 담당 이성근 본부장 08/23 박영서

협조자

시행 강원본부-4819 ( 2010.08.23. ) 접수 ( )

우 220-706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1475 3F(관설동 1426) / http://www.korpa.or.kr  
전화 (033)732-8501 /전송 (033)732-8506 / grizi@korpa.or.kr / 공개

## 무선종사자의 자격범위 및 종사범위

<b>육상무선통신사</b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육상에 개설한 무선국(항공국과 방송국을 제외한다)의 공중선전력 1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(무선전신은 제외한다)의 통신운용</li> <li>2. 다음 각목에서 정한 무선설비의 기술운용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공중선전력 500와트 이하의 다중무선설비</li> <li>나. 공중선전력 500와트를 초과하는 다중무선설비로서 무선설비기사의 지휘하에 행하는 것</li> <li>다. 레이더의 외부의 전환장치로서 전파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기술운용</li> <li>라. 제1호의 무선설비</li> </ol> </li> <li>3.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(전화급)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운용</li> </ol>
<b>제한무선통신사</b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육상 및 선박에 설치하는 무선국(아마추어국, 항공국, 방송국은 제외한다)으로 공중선전력이 50와트(선박에 설치된 디지털선택호출 장치는 75와트) 이하인 무선설비(무선전신, 다중무선설비는 제외한다)의 통신운용</li> <li>2. 다음 각목에서 정한 무선설비의 외부의 전환장치로서 전파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기술운용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레이더</li> <li>나. 제1호의 무선설비</li> </ol> </li> </ol>